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	----

제출년월일 : 98.8.20.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따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조직감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

- 현행 1실 3국 3담당관 16과 → 3국 1실 14과로 축소(1국 4과 감축)
 - 국 단위 : 기획실 폐지 → 총무국과 통합
 - 과 단위(3과 통폐합, 1과 폐지)
 - 세무과 + 징수과 = 세무과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 위생과 = 환경위생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

나. 주민복지를 위한 업무강화 및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업무기능 조정

- 청소년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총무과의 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계단위 신설)로 이관
- 총무과의 통신업무를 재무과로 이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에 따라
 -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병무업무는 민원봉사과로
 - 재난관리업무 및 안전지도업무는 방재업무로 통합하여 건설과로 이관
- 도시개발과의 광고물관리업무는 문화공보과로 이관
- 건설과의 하수관리업무는 도시개발과로 이관
- 환경보호과의 생활공해방지(오수정화)업무는 청소행정과로 이관

다.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계재 폐지(담당제로 운영)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직관리지침 시달)
- 나.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98.6.18)
- 다. 부산광역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98.6.19)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실, 국·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을 두며,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구정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3. 지시사항 총괄
4.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5.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사항
6. 예산편성 및 배정
7.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8. 민자유치 및 경영사업 총괄
9.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관한 사무
10. 자치법규 관리
11. 법령질의 해석 및 상담
12.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
13. 통계업무

14. 행정관리 개선
15.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16.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7.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총무국) ① 총무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총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영선공사 포함) 등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상훈,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행사 수행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조정·개편에 관한 사항
6.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한 사항
7. 행정사, 인장업에 관한 사항
8. 동행정 지도감독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9. 도시환경정비 및 해수욕장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사항
11. 시민 건전생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계획수립 시행
14. 민방위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15.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16. 비상대책 업무
17. 그 밖에 타국 및 총무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재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2. 자출원 업무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4. 국·공유재산 관리 및 구 소유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7. 행정정보통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세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홍보 및 제도개선
2.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3. 시세, 구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세목표액 책정에 관한 사항
6. 세입에 관한 범칙사건 처리
7. 세무조사,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관한 사항
9. 세무제증명 및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국세, 세외수입 통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자금운용과 배정
13. 세입분석 평가

⑤ 문화공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시책 수립
2. 향토문화 발굴육성
3.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4.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5.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6.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국정·시정·구정시책 홍보
8. 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보호관리
10.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⑥ 민원봉사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2.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
3. 문서 및 공인관리
4. 민원사무제도 개선연구
5.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
6.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
7.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8. 구 산하기관 및 부서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9. 행정전산화 추진업무 및 전산 시설유지보수
10. 전산교육 및 전산실 운영관리
11. 전산등록전산시스템관리 지도감독 및 운영
12. 전산보안 업무 등 관련 사항

제5조 (사회산업국) ① 사회산업국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2. 생활보호 및 구호
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4. 자조근로사업 및 자활정착사업
5.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6.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사항
7. 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청소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9.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10.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11. 부녀, 아동복지법인 및 부녀아동 후생시설에 관한 업무
12. 여성단체 지도육성 및 사회참여 추진
13. 노인·아동·부녀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4. 가정의례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 가정, 요보호 여성에 관한 사항
16.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환경위생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
3. 공해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공해업소 및 시설의 지도감독
5.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6.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개선 및 배출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9. 소음·진동·비산먼지 규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0. 식품 및 공중위생업무의 종합조정
11.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허가,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식생활 문화 개선

④ 청소행정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4. 청소시설 및 장비 개선 및 보강
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 및 업무에 관한 사항
7. 공동,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⑤ 지역경제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단위경제발전 계획 수립
2. 시장육성 및 대규모 점포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가공처리에 관한 사항
5. 양곡 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
6. 산업행정의 총괄
7. 상공업진흥계획 수립 실시
8.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연료수급 및 공산품 품질관리
10. 산림보호 육성
11. 공원개발관리
12. 공원녹지 감시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가스안전관리 및 지도
14. 수산행정과 관련한 사항

제6조 (도시국) ① 도시국에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를 둔다.

②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행정의 종합조정
2. 건설사업계획의 수립시행
3. 건설사업 보상업무
4. 중기동원 입무
5. 기전설비 유지관리
6. 지역단위 재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7. 구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8. 도로, 하천, 구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10. 유선 및 도선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도시개발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개발행정종합 계획수립 시행
2.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3. 개발제한구역 및 행위제한구역 관리에 관한사항
4.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유수면매립(불법매립 포함)에 관한 사항
6. 하천 및 공유수면, 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상·하수,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항

④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종합 계획수립 조정
2. 건축허가 및 시공감독
3.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5. 민영주택,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불량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⑤ 교통행정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관광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조정
4. 주차시설 개발 및 관리
5. TSM(교통체계개선) 사업추진
6. 개인택시·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
7.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9. 자동차 정비업소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관리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11. 자가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2.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등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4.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교통질서제도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
5.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6. 건축물대장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택지초과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중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실·국 순위에 따라 국(담당관실·과)장"을 "국 순위에 따라 국장"으로, 같은조 3항중 "실·국(담당관·과)장"을 "실, 국, 과장"으로 한다. 제7조 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장"을 "기획감사실 기획 담당6급공무원"으로, "주무계장"을 "소관업무담당6급공무원"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제5조 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별표2중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위 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공보계장"을 "공보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공보계 직원"을 "공보담당직원"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4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담당관, 과장, 소속행정기관은 선임계장(합의제 행정기관은 소관담당관·과장), 동에 있어서는 사무장이 된다."를 "실·과장, 보건소는 6급공무원중에서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 동에 있어서는 7급 이상의 공무원중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의료보장계장"을 "의료보호업무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지정계장"을 "토지평가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지정계장"을 "중개업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 ⑬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업무주관계장"을 "해당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하고, "업무주관 담당자"를 "담당실무자"로 한다.
- 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건설행정계장"을 "건설행정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 ⑮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업무주관계장"을 "그 과의 해당업무 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 ⑯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경리 계장"을 "경리담당 6급공무원"으로, "개발행정계장"을 "개발행정업무 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 ⑰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서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보건 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 ⑱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서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보건 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